

주차장관리운영예규

랜드사이드운영팀 02-2660-2305

제정 2002. 12. 10 예규 제 19호
 개정 2004. 2. 5 예규 제 26호
 2009. 10. 16 예규 제 52호
 2013. 1. 11 예규 제 66호
 2014. 8. 26 예규 제 76호
 2015. 11. 27 예규 제 84호
 2018. 2. 6 예규 제100호
 2018. 6. 11 예규 제101호
 2018. 12. 27 예규 제285호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한국공항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서 관리·운영하는 공항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09. 10. 16>

1. “주차장”이란 공사가 직접 또는 위탁용역으로 관리·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.

제8조(주차료) ① 지사장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공사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행사 등의 사유로 무료개방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%를 할인할 수 있다. 다만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객에게 유리한 한 개의 할인 사유만을 적용하며, 다음 각 호의 할인증빙 허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. <개정 18. 2. 6>

1. 다음 각 항목의 자가 관련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탑승하여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(이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포함한다.)를 제시하는 경우
 - 가. 장애인
 - 나.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
 - 다.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5·18 민주유공자
 - 라.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
2.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이 동승한 렌터카 차량
3. 식별표지를 부착한 장애인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
4. “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”가 부착된 차량을 “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”(이하 이 항에서 “장애인 본인”이라 한다.)을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다음 항목의 서류 일체를 출차 시 제시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출차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.

- 가. 장애인 본인의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
- 나. 장애인 본인의 입출차 당일 항공권
- 5.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제휴를 통해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(예하 행정구역장 발급 다자녀 우대서류 포함)와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
- 6.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
- 7.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(친환경자동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)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, 단, 저공해자동차는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차종별로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달리 적용한다.
 - 1. 1종 50%
 - 2. 2종 50%
 - 3. 3종 20%

④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이 출차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할인을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~~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다자녀 할인대상 차량은 사후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~~ [전문개정 15. 11. 27]

(별표 1) <제8조의 제3항 관련>

유료주차장 할인증빙 허용기준

할인형태	허 용	불 허	비 고
다자녀 우대	- 지자체·금융사 제휴 다자녀우대카드(실물 또는 모바일 등록카드) 또는 발급 임시확인증 - 지자체 및 예하 행정구역장의 직인이 포함된 다자녀우대서류 - (사후할인만 허용)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명, 주소, 가족 수가 표기된 서류	- 다자녀우대카드 실물 외 형태 (사진·캡처된 휴대폰화면 등)	신분증 제시